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관광사업체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8조제9항에 따라 관광사업(기타유원시설업)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 효력 발생

2024. 12. 24.

제 주 시 장

- 공 고 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관광사업(기타유원시설업) 직권말소
- 공고기간: 2024. 12. 24. ~ 2025. 1. 8.
- 처분의 내용: 관광사업(기타유원시설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 법적근거: 「관광진흥법」제8조제9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
- 공고방법: 제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타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업종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명 (처분내용)	처분일
기타유원시설업	슈슈봉봉 제주**점	주식회사 로*영 (강**)	제주시 1100로 3321, *층	직권말소	2024.12.24.

7. 참고사항

가. 상기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가. 담당부서: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

나. 주 소: 제주시 광양9길 10, 6별관 5층 관광진흥과 사무실

다. 연 락 처: 064-728-2782(FAX: 064-728-2759, E-mail: kkssyy0719@korea.kr)